

## -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-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조치

코로나19 예방과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울산광역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.

2020년 10월 12일

울산광역시장

1. 처분당사자 : 울산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준수자

2. 준수사항 (마스크 착용 의무화)

- (과태료 부과대상 장소) 다중이용시설 등, 대중교통, 집회·시위장, 의료기관,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(붙임 참조)

• (다중이용시설 등 :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)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(방역수칙 의무화)시설의 사업주(책임자)·종사자·이용자

• (대중교통) 버스·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·이용자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(노선 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(통근·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, ③「항공안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(비행기-여객기)

• (집회·시위장)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·종사자·참석자

-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,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, 시위

• (의료기관) 의료기관의 종사자·이용자

- 「의료법」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

• (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) 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

- 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 
「노인복지법」제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- (마스크 종류)

-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 마스크

-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  - 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### 3.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

#### ○ (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)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

-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  - \* (질서위반행위규제법) 제9조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-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-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#### ○ (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) 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

-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-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
-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-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-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촬영할 때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
-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-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-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
4. 처분내용 : 준수사항 위반 시 위반당사자 과태료 10만원, 관리·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, 2차 위반 300만원

5. 과태료 부과권자 : 시장, 군수·구청장

6. 처분기간 : 2020. 10. 13.(화) 00:00 ~ 별도 해제 시까지

※ 단,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: ~ 2020. 11. 12.
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10. 13.(화) 00:00부터

## 8. 지도·점검 및 단속      ※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·점검 및 단속 실시

- (지도·점검) 시장, 군수·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·장소에서 위반행위 적발시,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, 불이 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<sup>\*</sup>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

\* 위반행위 적발 → 신분증 제시, 단속근거 설명 →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→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(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) → 과태료 부과통지 → 이의제기 안내(60일이내)

\*\*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

## 9. 처분사유 :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재확산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조치를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

## 10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제2의2호~4호 및 제83조

## 11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## 12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## 13.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· 조사 ·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**불임****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 · 장소**

구분	부과대상	시설명	소관부서
집합 제한 시설	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	유홍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뷔페	식의약안전과
		노래연습장	문화예술과
		실내 스탠딩공연장	문화예술과
		실내 집단운동(격렬한 GX류)	체육지원과
	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	중소벤처 기업과
		대형학원(300인 이상)	교육청
		유통물류센터	해당없음
	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	학원(300인 이하,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)	교육청
		오락실	문화예술과
		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(150㎡ 이상)	식의약안전과
		워터파크	관광진흥과
		종교시설	문화예술과
		실내 결혼식장	여성가족 청소년과
		공연장	문화예술과
		영화관	문화예술과
		목욕탕·사우나	식의약안전과
		실내 체육시설	체육지원과
		멀티방·DVD방	문화예술과
		장례식장	어르신복지과
		PC방	문화예술과
대중교통	대중교통 운수종사자·이용자	버스·택시 등	버스택시과
집회·시위장	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·종사자·참석자	소관부서	
의료기관	의료기관의 종사자·이용자		식의약안전과
요양시설, 주야간 보호시설	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		어르신복지과

\* 다중이용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을 고려하여 단계에 따라 적용

※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및 집회·시위장,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,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의무화는 단계 구분 없이 시행